

의안 번호	822
----------	-----

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: 2011. 6. 7(화)
- 제출자: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: 2011. 6. 8(수)
- 위원회상정: 2011. 6. 20(월)

2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(안 제5조)

- 국가보훈대상자 각종 행사 시 의전상 예우
-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 공적기재
-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-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

○ 보훈단체의 예산지원(안 제6조)

-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
-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 지원
-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

○ 복지지원 등(안 제7조)

-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
-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

4. 근거법규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5. 참고사항

- 울산지역 기초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 - 남 구('10.10. 9), 북 구('07. 6.11), 울주군('08. 6.12) : 조례제정
 - 동 구 : 미 제정
- ※ 전국 238개 기초자치단체 중 228개 자치단체 조례제정

○ 우리구 보훈단체 설립현황 ⇒ 9개 단체

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: 4개 단체
- 개별법에 의한 단체 : 4개 단체
-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에 의한 단체 : 1개 단체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국민의 책무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, 모범보훈대상자 포상, 각종 보훈문화 행사지원 및 보훈단체 예산지원 규정, 부칙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- 본 제정 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【 관련법령 】

국가보훈기본법

[시행 2009. 5. 1] [법률 제9395호, 2009. 1.30, 일부개정]

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[제2조](#)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 (국민의 책무) 모든 국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제19조 (예우 및 지원의 실시)

-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3조 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 - 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"공훈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 - 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 - 4.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
 - 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 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4조 (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·기념일 등 중요한 행

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,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제25조 (기념일·추모일 지정 등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·시기·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·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국가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"보훈의 달"로 지정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·항만·도로·거리·광장·공원·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·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.

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·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·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·광복회·4.19민주혁명회·4.19혁명희생자유족회·4.19혁명공로자회·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

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
2.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**동법**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(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).
3.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**동법**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
4. 광복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각각 **동법**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.
5. 4.19민주혁명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
6. 4.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**동법 제4조제1항제11호**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 중 **동법**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자(미성년자를 제외한다).

제5조 (조직) ① 각 단체에 본부·지부·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.

- ②본부는 서울특별시, 지부는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, 지회는 시·군·구(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)에 두고,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. 다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- ③국가보훈처장(이하 "처장"이라 한다)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·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
제7조의2 (사업)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**제1조**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승인기준·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④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**제15조**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·임대하는 경우에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【 참고자료 】

보훈단체 현황

1.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

- 가.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- 나.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- 다.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- 라. 광복회
- 마. 4·19민주혁명회
- 바.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
- 사. 4·19혁명공로자회
- 아.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
- 자.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
☞ 광복회는 울산·경남연합지부를 운영하고 울산시 관내에 지회는 없으나 유족회(임의 단체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. 개별법령에 의한 단체

- 가. 대한민국 6·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⇒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
- 나.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⇒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
- 다.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⇒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
- 라. 재향군인회 경남·울산지부(울산중구재향군인회)
⇒ 재향군인회법

☞ 위 단체 모두 중구지회 있음(재향군인회는 시지부가 없음)

3.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... 의한 단체

- 가. (사)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⇒ 민법 규정에 의하여 등

【 참고자료 】

보훈단체 현황

1.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

- 가.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- 나.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- 다.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- 라. 광복회
- 마. 4·19민주혁명회
- 바.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
- 사. 4·19혁명공로자회
- 아.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
- 자.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
☞ 광복회는 울산·경남연합지부를 운영하고 울산시 관내에 지회는 없으나 유족회(임의 단체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. 개별법령에 의한 단체

가. 대한민국 6·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
⇒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

나.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
⇒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

다.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
⇒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

라. 재향군인회 경남·울산지부(울산중구재향군인회)

⇒ 재향군인회법

☞ 위 단체 모두 중구지회 있음(재향군인회는 시지부가 없음)

3.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... 의한 단체

가. (사)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회

⇒ 민법 규정에 의하여 등